〈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 보 공 개 서

(주)라운즈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라운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4층
전화 : 02-554-0320
팩스 : 02-3453-5136
㈜라운즈 가맹사업팀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4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6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1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1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7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28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29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1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3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라운즈	GLASSBOX 외 1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4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09.13	2007.10.01	김세민,김명섭	02-554-0320	02-3453-5136
	법인등록번호	110111-3754036	사업자등록번호	119-86-0241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내이사	김세민	GLASSBOX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4층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김세민,김명섭	02-554-0320	02-3453-5136
사내이사	김명섭	GLASSBOX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4층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김세민,김명섭	02-554-0320	02-3453-5136
사내이사	김장중	GLASSBOX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4층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김세민,김명섭	02-554-0320	02-3453-5136
감사	한균우	GLASSBOX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4층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김세민,김명섭	02-554-0320	02-3453-513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글라스박스	GLASSBOX	2023.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4-26 3층	강현명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GLASSBOX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 칭	GLASSBOX / 글라스박스	
상 호	GLASSBOX안경 OO점	
상표(서비스표)	GLASSBOX	등록번호: 45-0016298-00-00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850,204	5,729,156	-878,951	5,201,008	-3,465,375	-3,610,142
2022년	7,485,682	7,836,792	-351,110	6,774,146	-4,071,334	-4,430,862
2023년	7,672,072	11,349,662	-3,677,590	7,635,093	-3,046,865	-3,326,479

※ 그 근거자료는 별첨 2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상기 1)의 재무상황 요약 내용은 가맹사업이 아닌 당사의 타 사업 분야의 내용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세민	대표이사	2016.03 ~ 현재	(주)라운즈 공동 대표이사	경영
	김명섭	대표이사	2017.11 ~ 현재	(주)라운즈 공동 대표이사	경영
	김장중	사내이사	2011.03 ~ 현재	사내이사	경영
	한균우	감사	2022.12 ~ 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2	2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라운즈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ROUNZ(등록번호:20240404)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예정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GLASSBOX (상표/서비스표)	상표사용	출원일자 2005.05.27 등록일자 2006.06.05	출원번호 45-2005-0002352 등록번호 45-0016298-0000	㈜라운즈	2026.06.05 (2026.06.05)

Ⅱ. 가맹본부의 GLASSBOX 가맹사업 현황

1. GLASSBOX를 시작한 날 : 2005년 11월 18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없음)

2. GLASSBOX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글라스박스	GLASSBOX	강현명	2005.11 ~ 2023.12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4-26 3층
(주)라운즈	GLASSBOX	김세민,김명섭	2023.12 ~ 현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4층

3. GLASSBOX 업종

영업표지	업종	
GLASSBOX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안경 프랜차이즈	안경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GLASSBOX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2	42	-	42	42	-	36	36	-
서울	9	9	-	9	9	-	8	8	-
부산	-	-	-	-	-	-	-	-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6	6	-	6	6	-	5	5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2	2	-	2	2	-	2	2	-
경기	13	13	-	13	13	-	11	11	-
강원	-	-	-	-	-	-	-	-	-
충북	3	3	-	3	3	-	3	3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4	4	-	4	4	-	3	3	-
경북	2	2	-	2	2	-	1	1	-
경남	1	1	-	1	1	-	1	1	-
제주	-	-	-	-	-	-	-	-	-

※당사는 2023년 12월 26일 GLASSBOX 가맹사업 일부를 양수하였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GLASSBOX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7	1	6	0	0	42
2022	42	0	0	0	1	42
2023	42	0	0	6	1	36

GLASSBOX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GLASSBOX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라운즈	ROUNZ	20240404	안경	0/2	0/2	0/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36	-	-	-	-	-	-	-
서울	8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1	-	-	-	-	-	-	-
인천	5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2	-	-	-	-	-	-	-
경기	11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3	-	-	-	-	-	-	-
충남	1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3	-	-	-	-	-	-	-
경북	1	-	-	-	-	-	-	-
경남	1	-	-	-	-	-	-	-
제주	-	-	-	-	-	-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가맹계약서 상 공급물품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안경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우며, POS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 가맹점에서 자점매입을 통해 제품을 자체조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가맹점 중 일부 가맹점만 본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그 일부 가맹점도 전체 매입제품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는 허위, 과장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추정결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GLASSBOX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가맹점 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허위, 과장된 가상의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GLASSBOX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GLASSBOX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36	4826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GLASSBOX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GLASSBOX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3]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소 계	**비공개**	-	-	-	
판촉	소 계	**비공개**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서초3동 지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10	02-598-34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IBK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IBK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 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라운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보상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11항의 내용과 같이 당사가 지정한 예치기관 [IBK기업은행]을 통하여 가맹금 예치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GLASSBOX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 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가맹점 오픈 이전 해지 시 일부 반환 단, 가맹점 오픈 이후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오픈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변심에 의한 해지 시 위약금으로 일부 반환될 수 없음 *가맹점 오픈 이전에 소멸되는 비용	
가맹금	계약금	4,400				
	가입비	11,000				
	오픈지원비	1,100				

* 위약금 규정
- 계약체결 5일 이내 계약의 일방 해지 시 -> ₩3,000,000원
- 계약체결 5일 이후 계약의 일방 해지 시 -> ₩5,000,000원

2) 보증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	비고
총계	-			
상품대금 보증보험	증권가액 일천만원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및 본사가 공급한 상품 파손 등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6,500]
계약금	4,400
가입비	11,000
오픈지원비	1,1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37-3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3.3㎡당 금액,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6,300]	[2,100]			
라운즈존 물품	가맹본부	3,300	-	계약체결일	상품 미공급시	[별첨7] 참조
인테리어 (100㎡-실30평 기준)	**협력업체**	63,000	2,100	공사완료일	공사 전 계약취소	[별첨4] 참조
	가맹점사업자 임의 선정 업체	총공사 견적금액의 10%를 검수비로 청구함				시방서 제공 및 검수비
기기	**협력업체**	-		업체계약조건		[별첨5] 참조
	가맹점사업자 임의 선정 업체	-				
간판	**협력업체**			설치완료일	주문 전 취소	[별첨6] 참조
	가맹점사업자 임의 선정 업체	총공사 견적금액의 10%를 검수비로 청구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 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안경사 면허증 소지자, 당사와 협의된 점포(100㎡이상)보유자, (사)대한안경사협회 정회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적정 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종업원들이 당사의 경영방침 및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자

신의 종업원에 대하여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 기타 교육에 대한 기준은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자가 공급할 것을 강제(의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 4-7]과 같습니다.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아래표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월회비	가맹본부	월 385	익월 5일	후불제로 반환대상 아님	후불제로 미반환	간판사용 및 상호사용료
개점이후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교육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교육 후 익월까지	교육 전 취소	교육 실시 후 미반환	
개점이후 특별교육	가맹본부	협의	교육 후 익월까지	교육 전 취소	교육실시 후 미반환	
개점이후 재교육	가맹본부	협의	교육 후 익월까지	교육 전 취소	교육실시 후 미반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협력업체**	사용금액의 13%				익월 말일에 수수료 제외 금액으로 정산
판촉분담비	가맹본부	아래 참조	판촉 후 익월까지	판촉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미반환	
광고분담비	가맹본부	아래 참조	광고 후 익월까지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 실시 후 미반환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6쪽]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공동 판촉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판촉물 제작 실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공동 광고 시
- 브랜드 광고는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 브랜드 광고 + 가맹점사업자 모집광고는 가맹본부 60%, 가맹점사업자 40%
- 가맹점사업자 모집광고는 가맹본부 10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X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X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하면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 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 사

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 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GLASSBOX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 포괄적 양수도에 따라 잔여기간만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입비(4,400,000원(부가세포함))와 오픈지원비(1,100,000원(부가세포함)를 공제한 금액(11,000,000원(부가세포함))과 라운즈존 상품비를 지불하고 상품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가맹본부와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본부와 신규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신규가맹 계약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최초가맹금인 (16,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경업금지 기간

계약기간 중에 GLASSBOX와 같은 동종 업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는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GLASSBOX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라운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GLASSBOX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안경테 등의 경우 품목이 추가·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GLASSBOX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GLASSBOX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품목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별 지역 특성에 따라 제품의 변경 또는 추가 시에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

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서면을 통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안경 관련 물품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GLASSBOX	ROUNZ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소재지 기준 반경 1km 단,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승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말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나)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다)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GLASSBOX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GLASSBOX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하기 외의 채널을 통해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상품·용역명	공급품목
㈜라운즈	ROUNZ	자사상품	GLASSBOX와 동일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하기 외의 채널을 통해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가맹본부	ROUNZ.COM	안경테, 선글라스	비대면 거래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100%	0%	0%	0%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액을 수집하고 있지 않아 추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맹점 외 타 채널에서 발생한 매출은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GLASSBOX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제2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제2항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5조 제2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5조 제2항
GLASSBOX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5조 제2항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5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안경원 운영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점포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당사의 명칭을 사업자/법인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영업표지 변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및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영업시간 및 복장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로부터 2회 이상 시정 경고를 받은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가맹점 운영 방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당사가 정한 교육에 자신 및 직원의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관리 감독 기준 위반으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가맹점사업자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가맹점의 관리 감독을 위한 당사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계약서, 매뉴얼 등의 정보를 누출한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불참할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당사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요구품목에 대하여 타 거래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승인된 제품 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당사의 협의 없이 제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월회비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공동 판촉비 및 광고비의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상품 대금 납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양도 규정을 위반해 양도를 한 경우	제50조 제1호(제46조)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이 지나도 매장을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	제50조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제5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제47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7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7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7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7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47조 제1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7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 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7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 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도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2-554-0320)

- 당사의 승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가맹점운영권을 양수받을 양수인은 당사와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 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 의무	상속 사유 발생 → 당사 통지(3개월 이내)	교육수료
대리 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대리 행사 사유 발생 → 당사 통지 → 당사 승인 → 대리권 행사	교육수료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당사 승인 범위 내	업무위탁 사유 발생 → 당사 통지 → 당사 검토 및 승인 → 위탁 업무 실행	교육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동안 귀하가 GLASSBOX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안경과 같은 시력교정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 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2-554-032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GLASSBOX의 영업시간 및 영업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30 ~ 22:00 (12.5시간)	주 6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팀 (02-554-03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는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 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 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광고 성격</th><th colspan="2">부담비율</th><th rowspan="2">분담 절차</th><th rowspan="2">비고</th></tr>
<tr><th>본사부담</th><th>가맹점부담</th></tr>
<tr><td rowspan="3">전국
광고</td><td>브랜드 광고</td><td>광고비의
50%</td><td>광고비 50% 중
1/가맹점 수</td><td rowspan="2">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td><td rowspan="3"></td></tr>
<tr><td>브랜드
광고+가맹점 모집
광고</td><td>광고비의
60%</td><td>광고비 40% 중
1/가맹점 수</td></tr>
<tr><td>가맹점
모집 광고</td><td>100%</td><td>-</td><td>-</td></tr>
<tr><td colspan="2">개별광고 및 판촉</td><td>-</td><td>100%</td><td>-</td><td></td></tr>
<tr><td colspan="2">판촉 행사</td><td>기획 및
디자인 본사
부담</td><td>제작실비 부담
(100%)</td><td>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td><td></td></tr>
</table>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지미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

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위약금 등을 부과합니다.

1) 귀하가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귀하의 변심에 의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는 금 삼백만원(₩3,000,000원), 계약체결일 5일 이후에는 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 30조(비밀유지의무), 제 31조(겸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매1일 당 금 오십만원(₩500,000원)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금으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4) 귀하의 귀책 사유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시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 사유 시에도 동일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가 됩니다.
가. 개점일 이후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중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 일천만원 (10,000,000원)
나. 개점일 이후 1년을 경과한 이후에 있어 상대방에 대하여 금 오백만원 (5,000,000원)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16,500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1차 상담	-가맹사업 내용 전달	D-45	-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7)일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해 제공	14일	-
점포계약	-입지선정	10일 내외	-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면적 계산	1일	-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가맹계약 체결) -라운즈존 상품대금 전액 납부	1일	-라운즈존 상품 대금 전액 납부
가맹금예치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16,500
도면 작성	-인테리어 및 별도 추가공사 도면 협의	20~30일	협력업체와 별도 약정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기타 설비 및 물품 대금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점포 개설	-운영 개시		견적 후 실비지급 선택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본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본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2-554-0320)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02-554-032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GLASSBOX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GLASSBOX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 기간 내	경영 컨설팅 제공	상황에 따라 자사상품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GLASSBOX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GLASSBOX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점 전 교육훈련비용은 무료입니다. 개점 후 실시되는 교육비용은 교육 실시 전에 통지 후 실비로 청구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종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및 훈련 불참 시에는 가맹계약서 제 45조, 제 46조에 따라 계약갱신의 거절 및 가맹점 운영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영업개시일	영업기간	매출액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별첨.1 영업표지

이미지	구분	상품분류	등록권리자	등록번호(등록만료일)
GLASSBOX	문자상표	35류(8판) 44류(8판) 09류(8판)	㈜라운즈	450016298000 (2026.06.05)

별첨2. 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5. 기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6. 라운즈존 상품

구분	품목	규격	거래형태	거래상대방	비고
라운즈존 상품	라운즈 베이직	80PCS	강제	가맹본부	
	라운즈 스탠다드	45PCS			
	라운즈 앱솔루트	30PCS			
	1.618	60PCS			
	MELT	40PCS			

별지1. 가맹점 목록

2023년 GLASSBOX 가맹점 목록 [2023-12-31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2-554-032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iglassbox.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